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356

발의연월일: 2025. 3. 26.

발 의 자:이만희·서천호·구자근

김기웅 · 엄태영 · 박형수

유용원 • 곽규택 • 박충권

김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으며, 5년간 합계 1억원의 증여세 감면 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자경농민의 가업 상속 장려를 통한 농업인력 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감면 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증여세 감면 한도를 5년 간 합계 5억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1항 및 제133조제4 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3조제4항 전단 중 "1억원"을 "5억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
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면) ①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	
림지ㆍ어선ㆍ어업권ㆍ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	
(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	
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	
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	
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	
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	
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이 조	
에서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	
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	
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	
다)에게 <u>2025년 12월 31일</u> 까	<u>2028년 12월 31일</u>

기	증여	하는	경우	우 에는	- 해딩	궁 농	-
지	등의	가액	에	대한	증여	세의	
100)분의	100	에	상당	하는	세액	
을	감면	한다.					

- 1. ~ 3. (생략)
- ② ~ ⑨ (생 략)
-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 ③ (생략)
 - ④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 (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계산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 ③ (현
행과 같음)
4
<u>5억원</u>
<u>.</u>